

★ ◎

더불어사는 화합의정신 성동

문서번호	건축과-4676
결재일자	2015.2.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주택사업팀장	건축과장	도시관리국장	
이종석	김관원	代은일근	02/24 윤호중	
협 조	건축기획팀장	은일근		
	건축지도팀장	김춘식		

- 2015년도 -  
**해빙기(풍수해 포함)대비 안전점검 실시계획(안)**

2015. 2.



**성 동 구**

(건 축 과)



- 2015년도 -

# 해빙기(풍수해 포함) 대비 안전점검 실시계획(안)

동절기 폭설한파 등의 영향으로 동결융해 현상의 반복으로 지반 및 건축물의 균열·붕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축공사장, 중점관리대상시설(C급), 옹벽, 담장 등에 대한 해빙기(풍수해 포함)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I 추진배경 및 근거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)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·관리등에 관한 지침)
- 2015년 건축물(시설물) 및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계획 수립[건축과-2723 (2015.01.27)]
- 2015 풍수해 대비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 일제점검계획 알림[안전치수과-2540 (2015.02.16)]

## II 안전점검 실시계획

□ 추진기간: 2015. 2. 23 ~ 2015. 3. 31

- 점검기간: 2015. 02. 23 ~ 2015. 03. 20
- 정비기간(재난관리시스템 입력 등): 2015. 03. 23 ~ 2015. 03. 31

□ 점검개요: 총 88개소(풍수해 대비 21개소 포함)

- 대형건축공사장(10,000㎡ 이상): 8개소(주택사업 현장 2개소 포함)
- 중점관리대상 시설물(C급건축물-폐가,공가 포함): 30개소
- 축대·옹벽·석축(담장 포함): 31개소
- 급경사지: 5개소
- 재난위험시설물(D급): 1개소
- 일반공사장: 1개소
  - 10,000㎡ 이하로서 지하층 공사 중단 현장
- 추가점검분: 12개소(동주민센터 요청분)

## □ 점검반 편성 및 점검 방법

### ○ 점검반 편성(총괄: 건축과장)

- 1반: 건축기획팀장, 김형복, 장동철, 윤선희
- 2반: 건축지도팀장, 곽지연, 윤용준
- 3반: 주택사업팀장, 김일법, 이종석

### ○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(구조분야)와 합동 점검

- 중점관리대상 시설물(C급), 재난관리시설(D급) 및 급경사지, 옹벽, 석축 등
- 대형 건축공사장, 일반건축 공사장, 추가점검분

## □ 외부전문가 점검 및 소요예산

### ○ 점검건수: 88건

### ○ 외부전문가: 2명

- 한양종합기술원기술사무소 오문식(성동구 재난관리자문위원)
- 서울시립대학교 권기혁 교수

### ○ 소요예산: 건축과, 건축행정, 건축물안전 및 위법관리, 시설물안전점검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(재난관리위험시설물 안전점검)

- 88개소 ÷ 12개소(1일) = 7.3일 × 368,391원(1일기준) = 2,689,254원

※ 점검대상 증감시 1일 13개소 ~ 14개소를 기준으로 점검비용 변경가능

### ○ 산출내역: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(기술사, 건설 및 기타엔지니어링사업)

## III

## 안전점검 결과 조치사항

- 점검결과 긴급조치를 요하는 경우 응급조치 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치
  -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사용제한 및 강제대피 명령
  - 점검결과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관리
-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점검내용을 통지하여 현장시정조치
-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관계자 및 관리주체(소유자)에게 통보하여 시정지시 및 안전조치토록 명령
  -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·보강 실시토록 독려

## IV

### 행정 사항

-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관계자 및 소유자에게 정비기간 (15. 3. 23 ~ 15. 3. 31)중에 자진정비토록 독려
-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(D급,E급)확인시에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고시 및 관리카드 작성하고 관리책임자 등 지정
- 점검결과는 반드시 「재난관리시스템」에 입력하고 보수·보강 등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, 안전치수과에 결과 통보

- 붙임 1.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(88개소, 풍수해 대비 포함) 1부.  
2. 시설별 안전점검 요령 1부.  
3. 안전점검서 1부. 끝.